검토사항 적합여부 업무 관련성 • 접대, 교제,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･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- 기부금, 광고선전비,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예 아니요 부담 주체 •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(법인의 회장, 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, 감사 등),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(법령§40①) 예 아니요 지출 증명 서류 •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(경조금의 경우 20만원)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, 계산서, 세금계산서, 원천징수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(미수취시 한도액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) 예 아니요 손금 산입 한도액 기본 한도 • 기본한도 1,200만원(중소기업의 경우 3,600만원)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-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예 아니요 수입 금액별 한도 • 수입금액별 한도 :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-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(법법§25④2)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.3%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＋(수입금액－100억원)×0.2%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＋(수입금액－500억원)×0.03% 예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(법령§42②) -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% 초과 -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, 이자･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% 이상 -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예 아니요 문화 접대비 • 문화 접대비 지출 검토 -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20%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